

온누리재가방문요양센터

이용자 모집 방법 및 이용계약사항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질환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모집방법

- 1) 직접 방문 또는 대상자 방문상담을 통하여 모집한다.
- 2) 기관 명칭과 전화번호를 통하여 모집한다.
- 3) 노인 장기요양보험 포털 사이트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한다.
- 4) 아파트, 주택 전단지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계약목적

-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작성일로부터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해제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5)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 1) 급여비용은 등급과 상관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산정된다.
- 2) 서비스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 15% , 의료,감경대상자 6% , 9%**(의료급여수급권자중 기초생활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의료)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청구하지 않는다.
- 3)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은 기관 임의대로 면하거나 할인을 할 수는 없다.
- 4) 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이용료는 말일까지 납부한다.

【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대상자 급여 계획에 알 권리
-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시설 입소,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

-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의 관한 의무
- 2)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3)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 4)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 5)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성전 및 대리인에 관하여 기관 통보 의무
- 6) 수급자 병원 입원 시에는 간병 및 입,퇴원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 계약해지 】

-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3) 대상자의 시설 입소 및 사망하였을 때

-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5) 수급자가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케어 및 위험에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 6)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7)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 8)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 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한다.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방문요양 1회 이용 비용 본인부담금

방문당 시간	25년수가	본인부담금 1회비용 일반 15%	본인부담금 1회비용 감경 9%	본인부담금 1회비용 감경 6%
30분 이상	16,940	2,541	1,524	1,016
60분 이상	24,580	3,687	2,212	1,474
90분 이상	33,120	4,968	2,980	1,987
120분 이상	42,160	6,324	3,794	2,529
150분 이상	49,160	7,374	4,424	2,949
180분 이상	55,350	8,303	4,981	3,321
210분 이상	61,670	9,251	5,550	3,700
240분 이상	68,030	10,205	6,122	4,081

* 방문목욕 1회 이용 비용 본인부담금

분류	25년 수가	본인부담금 1회비용 일반 15%	본인부담금 1회비용 감경 9%	본인부담금 1회비용 감경 6%
방문목욕 차량 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6,480	12,972	7,783	5,189